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등)과 일반주민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고용복지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추경에 반영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5. 23 ~ 6. 1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6. 14)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민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0번지에 둔다.

제3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고용·복지 증진사업
2. 고용촉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4. 취미·여가활동·문화·교양 교육사업
5.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제4조(운영)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에 이바

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센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중소기업체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업 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평가

2.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구청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